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1. 3.

목 차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6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시설 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9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FAQ)	14
[참고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22
[참고4] 복지부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25
[참고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27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1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2 교육내용 및 방법

※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교육 내용 및 결과 점검을 강화하여 시행

< '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20년) 기존	(21년) 변경사항
민간 콘텐츠 인정	▶ 복지부 제작 콘텐츠만 인정 (민간 콘텐츠 불허)
강사 자격 요건(권장 기준)	▶ 강사 자격 요건(필수 기준)
간소한 증빙자료 요건	▶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별도 콘텐츠 운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통합 (1시간 또는 2시간 분량)

-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 (교육 이수기간) '21.1.1.부터 '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참고4]

- (집합교육) 아래 필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또는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만 인정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인력 필수 자격 요건 >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 충족 필요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급 이상(관장 포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교육 콘텐츠) '21년도에는 교육이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를 통일하여 2종류로 구성(1시간, 2시간)

- *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 ②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

- 동영상 교육 이수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만 해당하는 경우 1시간 또는 2시간 동영상 자료를 통해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 신고의무자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일 경우 총 2시간 이수가 필요하므로 공통기관용(2시간) 교육자료 이용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공직유관단체

※ (2시간 이수가 필요한 공통기관(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및 보건소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대학병원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4 기타 사항

- 각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교육 안내시 **결과보고서 양식[붙임2]** 자료를 송부하고, 복지부 위탁 교육 사이트 등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아무런 정보 없이 해당 신고의무자 기관/시설에 교육 안내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

- 신고의무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의 각 관리·감독기관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참고2]을 참고하여 답변

- 기타 문의는 가급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이용할 것

문의 내용	구 분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및 탑재, 실적관리시스템상 실적입력 단위 신설 등 교육결과 제출 관련 문의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內 ‘교육콘텐츠’ 부분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02-6283-0635)

참고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1 기본개요

-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예시 :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

2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법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3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법 제10조의3)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4 기타

문의 내용	구 분
▶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개별 법령 소관부처)	➡ 기관·시설 관련 담당부처
▶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③ 교육 미 실시 시 제재 * 「2020아동분야 사업안내(2)」 p.166 참고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다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부과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예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장(교육감)이 부과

- 아동 담당부서 또는 시설 과태료 처분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

- (기타) 기타 과태료 산정기준 및 부과금액, 부과절차(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①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② 교육점검 대상기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참고1] 참고

③ 교육시행 결과 제출 (※ 교육점검 강화)

※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의 교육 결과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 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실적으로 인정 필요

-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제출내용) 2021년 실시한 교육실적 및 2021년도 과태료 부과실적
- (제출기한) 2022년 1월 1일 ~ 2월 28일
- *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결과는 연차보고서 형태로 매년 하반기 국회 보고
- (제출방법) 관리·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은 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로부터 결과보고서[붙임2] 및 관련 증빙자료 취합 후, '22.1월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입력 진행

*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보건소 등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별로 직접적인 관리·감독기관(1차 취합기관)이 다양

- (실적입력 내용) 제출기관명, 총기관수, 교육이수 기관수, 총 인원, 교육 이수 인원, 파일 참고([붙임3]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등
-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붙임2] 양식에 실적 작성 후 1차 취합 기관에 제출

< 실적입력 관련 예외 사항>

- ※ (자체 실적입력 기관) **아동권리보장원(1호), 육아종합지원센터(2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장과 의료인·의료기사(15호), 대학내 평생교육기관(18호)** 실적의 경우 상위기관 취합 없이 해당기관에서 입력 요망
- ※ 신고의무자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무원 실적의 경우는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각 지자체 인사팀**에서 실적을 취합해서 입력
 - 시·도는 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적을 취합하여 입력하고, 시·군·구는 소속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적을 포함하여 자체 실적 입력
- ※ 1차 취합기관이 실적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부처 소관과 또는 시·도에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서 실적을 일괄 취합하여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

- (증빙자료) 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은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엄격한 실적 관리 이행이 필요하며,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할 것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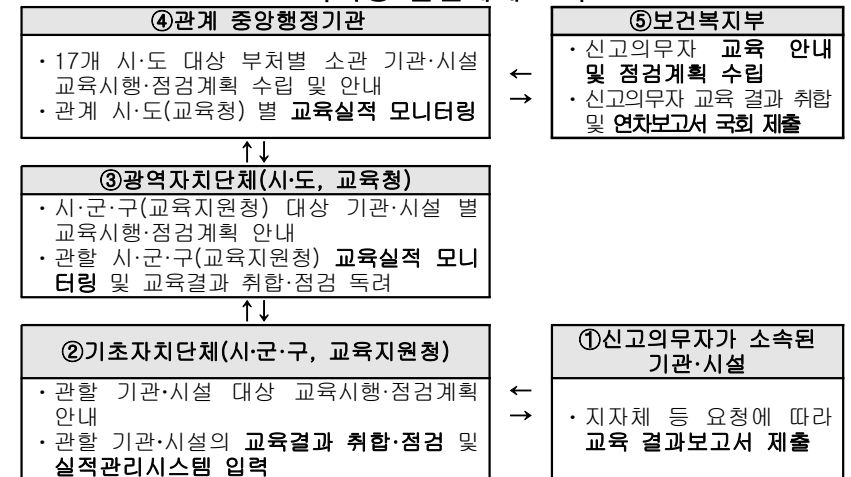
- ※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비대면일 경우 화면 캡처),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 복지부 제공 콘텐츠 사용 필요
-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제작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 제출
 - (복지부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복지부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④ 각 기관별 교육시행 및 교육실적 제출(시스템 입력) 안내

- ※ 아래는 대다수 신고의무자 직군의 교육실적 제출체계로 일부 소수 직군의 경우 교육실적 제출 방법은 다를 수 있음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별 중앙부처 소관부서는 **[참고1]** 참조

- 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 작성 후 교육시행을 직접 안내받은 소속 시·군·구(②)/시·도(③) 관할부서로 제출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④)로부터 직접 안내받은 경우 해당 소관과(④) 제출)
- ②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1차 취합기관) 관할 기관·시설에 교육시행 안내 및 교육결과 취합[붙임3] 및 정리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 * [붙임3] 결과보고서, 교육 실적취합 결과 내부결재 공문(자유양식) 첨부 필요
- ③ (광역자치단체(교육청)/상위기관) 시·군·구(교육지원청)에 기관·시설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소속 시·군·구 등 교육실적 모니터링
 - * 시·도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시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 실적은 시·도에서 직접 입력 필요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에 대한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공문 시행), 시·도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 * 부처에 소속된 일부 기관·시설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직접 교육결과를 입력할 것

< 교육시행 전달체계 요약 >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시설 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대상기관) 7개 부처, 25개 직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부처명	기관유형	해당기관	소관부서	근거
부 처 명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권리와	1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권리보장원	아동복지정책과	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아동 권리와	2호
	아동복지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아동학대대응과	2호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2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동복지정책과	3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역복지과	7호
	사회복지시설 (34조)			7호
	가)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7호
	저)노숙인지원시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7호
	나)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7호
	다)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정책과	7호

부처명	기관유형	해당기관	소관부서	근거
	*「노인복지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7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험운영과	7호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과	11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책과	12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기반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14호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기관정책과	15호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건강정책과	15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 수행자	장애인권익지원과	16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 수행자	장애인자립지원과	16호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17호
	청소년 활동시설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지원과	18호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아동 권리와	24호
	입양기관	입양기관	아동복지정책과	25호

부처명	기관유형	해당기관	소관부서	근거
소방청	구급대	119구급대의 대원	119구급과	10호
여가부	가정폭력 관련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권익보호과	4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5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6호
	성매매관련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권익기반과	8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권익지원과	9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 지원	18호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18호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법인	청소년정책과	18호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활동안전과	18호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보호 환경과	19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과	21호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가족문화과	23호

부처명	기관유형	해당기관	소관부서	근거
문화부	1. 문화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18호
	(1-1) 공연시설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공연전통예술과	18호
		영화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영화진흥법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영상콘텐츠산업과	18호
	(1-2) 전시시설	박물관(국립,공립,사립,대학), 미술관	문화기반과	18호
	(1-3) 도서관	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정책기획단	18호
	(1-4)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의 집	지역문화정책과	18호
	(1-5)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정책과	18호
		국악원, 전수 회관	공연전통예술과	
	(1-6) 종합시설	복합문화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공연전통예술과	18호
	3. 체육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민간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	18호
		공공체육시설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한체육회(태릉, 진천, 태백 선수촌)	체육정책과	
과기부	2. 과학관 * 청소년이용시설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과학기술문화과	18호
산림청	5.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 청소년이용시설	자연휴양림	산림휴양등산과	18호
	6. 수목원 * 청소년이용시설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산림환경보호과	18호

부처명	기관유형	해당기관	소관부서	근거
국립유원지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정책과	13호
	4. 평생교육기관 * 청소년이용시설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등	평생학습 정책과	18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복지정책과	20호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평생학습정책과	22호
지자체	8)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지자체	18호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사항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Q.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둘 다 실시해야 하는 기관(공통기관)의 경우 총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총 2시간 이상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인 동시에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의무 기관·단체의 경우(예시 :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도서관·박물관 종사자, 보건소·대학병원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교육을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등

Q.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2021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완료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시행을 안내해 준 관리·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 보통 시군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시행합니다.

Q. 2021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인터넷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동영상 강의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는 현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내 '교육콘텐츠' 부분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기타 공공/민간 기관 교육 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21년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점검 강화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합교육시 강사 교육이 아닌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복지부가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만 인정되며, 인터넷 강의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기타 기관에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Q.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료증 발급은 [참고3]의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에서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에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국가기관, 지자체)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여부

Q. 저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직무 수행시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아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체육시설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교육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 청소년시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8호)
 -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및 제32조제4항)
 - ☞ ‘체육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Q.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시설 별로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6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오직 성인만 대상으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상품 판매 시설

Q.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7호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Q.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 26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교육 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20년도 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는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A. 2020년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교육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14조' 삭제('18.4.25. 시행)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20.10.1 재신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위 변경사항('20.10.1 시행)

근거 법령	(변경 전) 교육대상	(변경 후) 교육대상
7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호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호	없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Q. 휴원 및 폐원한 기관(어린이집 등)도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예시 : 어린이집 등)이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 경우 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이 2021년도에 휴원했으나 2022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요청 공문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해당 시설이 다시 개원한 경우 2021년도에 실시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결과제출 요청 공문 발송일자가 2022년 1월 1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 ✓ (예시1) 2021. 5. 1. 폐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 (예시2) 2021. 5. 1. 휴업, 2022. 2. 1.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 (예시3) 2021. 5. 1. 휴업, 2022. 1. 5.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임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 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보건진료소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건소는 병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은 의원으로 보고 있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입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시설로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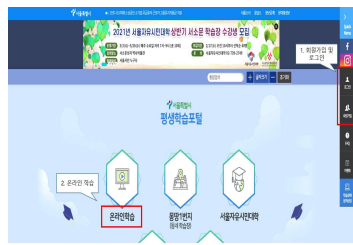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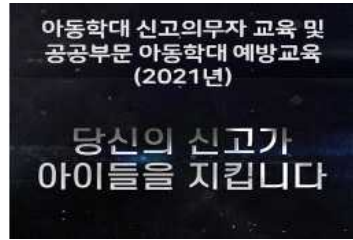
Q. 교육 결과보고서의 총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결과 취합 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휴직자 및 퇴사자도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교육 결과보고서 총 인원 및 수료인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며, 휴직자 및 퇴사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종사자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총 인원 수에서도 제외할 것)

참고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②'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의 경우 매년 총 2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여야 하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온라인학습 클릭
	4.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5.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②'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 수강신청 6. 강의 수강 7.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2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②'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2시간)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습
5. 1~4차시(1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4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안내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 - 과정명에 '아동학대' 검색

4. '아동학대 예방'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습
5. 1~4차시(2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수강확인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꼭 수료증을 출력해주시길 바랍니다.

5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 신청 **또는**,
- * '공동활용기관' - '공동활용신청'(각 기관 나라배움터 담당자에게 문의)을 통해 각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수강 가능

1. 나라배움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신청
5. 1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강의실 - 수료증 관리(좌측메뉴) - 수료증 출력

참고4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1.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접속 2. 교육콘텐츠 클릭 3. 콘텐츠 사용신청 클릭
	3.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 PPT) 클릭
	4.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
	5.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등록 -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탑재 사이트 주소, 신청사유, 보안동의

	6. 콘텐츠 다운로드 클릭 ※ 교육콘텐츠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성명 및 이메일 입력
	8. 승인 상태 및 상세정보 확인
	9. 상세정보 내 첨부파일 또는 다운로드 링크 별도 안내 예정

참고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